

보도자료



2020년 1월 1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물복지정책팀 팀 장 안유영(044-201-2371), 사무관 김철기(2374) / 제공일: 1월 16일(총 7매)

对对吸引 多外双卫 经分析卫 生时部 44

동물실험 관련「동물보호법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-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절차 마련 및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-

《주요내용》

- ◆ '18.3.20 공포된「동물보호법」개정안 시행(2020.3.21.)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,
 - 사역동물 실험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, 실험동물의 공급출처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(2020.1.17. ~ 2020.2.26., 40일간)
- 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미성년자(19세 미만)의 동물*해부 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「동물보호법」 개정안**의 시행(2020.3.21.)을 위해 「동물보호법」시행규칙을 마련, 이를 2020.1.17.부터 2020.2.26. 까지(40일간)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 - *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·조류· 파충류·양서류·어류를 말하며, 그 사체까지 포함 ** 붙임1 참조

-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, 2019.6.6. 발표한 「동물실험·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」에 따라 **사역동물** 및 유실·유기동물에 대한 **실험요건과 절차를 강화**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.
- □ 우선, '18.3.20 공포된 「동물보호법」 개정안 시행(2020.3.21.)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한다.
 - 「동물보호법」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**미성년자** 에게 **살아있는 동물**에 대한 **해부실습**을 하게 하려면 동물실험 윤리위원회*(이하 '위원회')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**심의**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.
 - *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며,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해당 기관의 동물실험을 심의·감독하는 위원회
 - 심의의 구체적인 방법은, 「동물보호법」제27조에 따른 윤리위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,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,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협약을 맺고 윤리위원회를 이용 하는 경우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.
 - 다만,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**동물의 사체**(장기 등)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 외에 **학교운영위원회의** 심의를 거친 동물해부실습도 허용하도록 하였다.
- □ 또한, 사역동물 등 동물실험 시 예외적 허용 사유 등을 대폭 축소한다.
 - 「동물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·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,

- 「동물보호법」 제24조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사역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비교적 쉽게 허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, 실험의 사유·절차를 대폭 축소한다.
- 현재는 법 시행규칙(제23조)을 통해 질병의 진단·치료 또는 연구 등의 경우* 사역동물 등으로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**의 동물 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 - * ▲질병의 진단·치료 또는 연구, ▲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, ▲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.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
 - **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국가, 지자체, 의료기관, 대학교 등)
-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▲"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,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" 사유를 삭제하고, "사역견의 선발 및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" 사유를 신설한다.
- 또한 "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"에만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.
- □ 마지막으로, 사역동물 등 실험동물의 사용실적 통지 의무를 신설한다.
 -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해 사역동물 또는 유실· 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**현황** 및 모든 실험동물의 공급 출처를 **검역본부에 매년 제출**하도록 한다.
 - 이를 통해 사역동물 등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, 향후 실험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.
- □ 참고로,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개정(안)에 대한 **입법예고 공고** 및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(http://www.mafra.go.kr),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.

붙임1

「동물보호법」 개정안(2020.3.21 시행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	안
<u><신 설></u>	제24조의2(미성년자	동물 해부실
	습의 금지) 누구든	<u> </u>
	(19세 미만의 사람	을 말한다. 이
	하 같다)에게 체험	•교육•시험
	•연구 등의 목적	으로 동물(사
	체를 포함한다) 혀	개부실습을 하
	게 하여서는 아니	된다. 다만,
	「초・중등교육법	」 제2조에
	따른 학교 또는 동	물실험시행기
	관 등이 시행하는	경우 등 농림
	축산식품부령으로	정하는 경우
	에는 그러하지 아	니하다.
	[본조신설 2018. 3. 2	<u>20.]</u>
	[시행일 : 2020. 3. 2	1.] 제24조의2

「동물보호법」 시행규칙 개정안(2020.3.21 시행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	제23조(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
외) ①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	외) ①
분 단서에서 "농림축산식품부	
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"	
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
1. 인수공통전염병(人獸共通傳	1
染病) 등 <u>질병의 진단・치료</u>	<u>질병의 진단·치료</u>
<u>또는</u> 연구를 하는 경우	또는 확산방지를 위한
2. 방역(防疫)을 목적으로 실험	2. 사역견 선발 또는 효율적인
하는 경우	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
	<u>경우</u>
3.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(種)의	<u><삭 제></u>
생태,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	
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	
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실험	2
을 하려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	
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	
실험윤리위원회(이하 "윤리위	
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치되,	
심의 결과 동물실험이 타당한	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

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 으로 본다.

<신 설>

것으로 나타나면 법 제24조 각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-----

- 제23조의2(미성년자 동물 해부실 습 금지의 적용 예외) ① 미성 년자에게 동<u>물 해부실습을 하게</u> 하려는 자는 동물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②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"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시행 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해 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 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 - 2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이 조에서 "학 교"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동 물 해부실습으로서 법 제27조 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 를 받은 경우
 - 3.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 부실습으로서 해당 학교와 다

른 학교가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심의를 받은 경우

4.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 부실습으로서 다른 동물실험 시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에서 설치·운영하며 법 제26 조제1항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 은 경우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으로서 「초・중 등교육법」 제31조의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할 수 있다. 다 만, 학교운영위원회는 해부실습 의 심의를 하려면 법 제27조제2 항제1호의 수의사 또는 윤리위 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참여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